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학술지 편집위원회 규정

2005. 12. 22. 제정
2008. 8. 18. 개정
2014. 8. 12. 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규정 제11조에 의하여, 법과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하는 '법과정책' 및 '국제법무'(이하 '학술지'라 한다)의 편집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편집위원회 구성) ①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내외로 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.

② 편집위원장은 교내외의 전임교수 중에서 법과정책연구원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원장이 임명한다.

③ 부위원장은 부원장이 겸직하며, 편집위원장을 보좌하고 편집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④ 편집위원은 법과정책연구원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원장이 위촉·임명한다. 편집위원은 최소 6개 이상의 광역시·도 소재 대학 및 법학 관련 연구소나 기관에 재직하는 교수 및 전문가를 포함한다.

⑤ 편집위원의 명단과 소속은 '법과정책'과 '국제법무'의 속표지에 명시하여야 한다.

⑥ 원장은 편집위원으로의 위촉이 예정된 자에 대하여 최근 3년간 연구실적목록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⑦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단,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이 해외출장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1년 이상 위원직을 수행하기 어려울 때에는 사퇴할 수 있으며, 결원으로 충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⑧ 편집위원회에는 편집실무를 담당하는 간사를 둘 수 있다.

제3조(임무) ① 편집위원회는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.

1.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
2. 논문을 심사하기 위한 심사위원의 지정 및 위촉
3. 논문심사위원의 심사결과에 대한 최종 사정 및 게재여부 결정
4. 학술지의 편집·인쇄 및 출판
5. 기타 학술지 편집에 관한 중요 사항

② 학술지 논문투고 및 논문심사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.

제4조(운영) ① 편집위원회는 매년 5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며, 원장이나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
② 편집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편집회의를 주재한다. 편집위원장의 유고시에는 편집부위원장이 하고, 원장이 지명하는 편집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 과반수(위임장 포함)의 출석으로 개의하며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,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가부를 결정한다.

제5조(명예와 비밀의 보장) ① 편집위원은 법과정책연구원의 권위를 대표하는 자로서의 명예를 보장받으며, 위원별로 수행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원장과 편집위원장 이외에는 누구로부터도 업무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.

② 편집위원은 학술활동에 관여된 사람들의 명예를 위해서 필요한 비밀은 누설하면 아니 된다.

제6조(편집실무위원회) ① 편집위원회가 위임한 사항과 편집과 관련된 일상적인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5인 내외의 편집실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
② 편집실무위원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편집위원 중에서 선임하되, 원장과 편집위원장은 당연직으로 포함된다.

제7조(기타)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.

제8조(개정) 이 규정은 법과정책연구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8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4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.